

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건축과)

1. 제안이유

-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·운영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1조, 제2조)

-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

나. 적용 범위 및 감독 신청, 감독 대상의 선정(안 제3조 ~ 제5조)

-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범위와 감독 신청, 감독 대상의 선정 방식을 규정함

다. 감독의 실시·중지·결과 등(안 제6조 ~ 제8조)

- 시장이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시·중지·결과 등에 관해 규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시행된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, 지난 3월 경기도가 시행한 ‘시·군

집합건물 감독 조례’ 제정 권고에 따라,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으나,

원안의 적용 범위와 감독반의 구성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